

2023년도 제2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1. 8.(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대행), 김춘식, 정경오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대행
2. 전차(제2023-27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대행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대행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556건(안건번호 제2023-222560호~제2023-22472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222560호~222578호(순번 1번~19번)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22579호~222606호(순번 20번~47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22607호(순번 48번)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 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비공개 전환된 게시물이긴 하나 불법복제물이 다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시정권고의 실효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22608호~222626호(순번 49번~67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22627호~222630호(순번 68번~71번)는 블로그 및 카페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42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490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3-22012호~22501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490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80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7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김춘식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민영 주임: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은 전부 공개함.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15쪽 내지 2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이숙형 부장: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정숙 분과위원장 대행: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형 부장: 금일 심의안건은 38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3,55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거래글이 블로그에 게시된 사안임. 총 31개 게시물이임.

(순번 5번 및 1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현상공연을 몰래 녹화하는 행위),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교환 또는 판매하고 있음. 게시물에는 게시자가 보유한 녹화물 등의 제목, 공연

일, 출연자 목록 등이 다수 게시되어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며, 현장 공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교환 또는 판매를 위해 전송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현장공연 녹음·녹화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한 파일이나, 권리자에 의해 이미 영상물 또는 음반으로 고정된 DVD, OST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한 파일 모두 보호원의 시정권고 대상인 불법복제물로 판단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반 블로그 게시물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쇼핑물의 제품 판매 게시물과 동일하게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것임. 게시물의 내용 및 비밀댓글 개수에 비추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가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하였으며, 이러한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비추어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어 시정권고의 대상이되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경우에는 게시자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김경숙 위원: 순번 1번 내지 19번은 뮤지컬 불법복제물이 직접 게시된 사안은 아니나, 해당 불법복제물을 교환 또는 판매한다는 게시글로서 저작권침해정보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김춘식, 정경오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1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0번~4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54건임. (순번 26번 및 4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본건 기기에 전용 앱(app)을 설치하면 실시간 TV 방송 서비스 및 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 방송 등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본건 기기 판매행위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 행위임이 인정됨.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건 기기 판매행위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본건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춘식 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건 기기 판매행위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함. 따라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경숙, 정경오 위원: 이견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0번~47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8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방송물의 자막파일을 영상 없이 게시한 사안이며, 총 8개 게시물임.

(순번 48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직접 번역하여 자막(.smi 파일 등)을 제작·전송하고 있음. 원저작물은 국내에서 방영중이거나 스트리밍 서비스 중으로, 합법 시장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음.

다만 심의일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접근이 제한되어 비공개 게시물로 표시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 중인 자막파일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것을 전제로 제작되어 있어,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의 이용 및 감상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심의 대상 게시물과 같은 최신저작물의 경우 공표 초기에 불법복제 및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합법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비교적 강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본건과 같이 동영상 없이 자막만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판단하고 있음.
그리고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이 블로그, 카페 등의 경우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이용약관, 운영정책 등을 위반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접근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일반적으로 해당 조치는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지며, 이용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 접근 제한이 해제됨. 따라서 불법복제물이 언제든지 다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더불어 접근 제한 조치는 제3자의 접근만 제한할 뿐,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는 이용자는 접근이 가능하므로 해당 페이지의 불법복제물을 다른 페이지로 옮겨 이용할 수 있음. 따라서 불법복제물이 다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시정권고의 실효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정리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다수의 자막파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 중이어서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 자료를 근거로 전체공개 상태의 게시물과 동일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김춘식 위원: 이번 심의대상 게시물 사안처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접근 제한 조치가 취해져 비공개 처리된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가 해당 osp 측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 이숙형 부장: 네 그러함. 일반적으로 해당 조치는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지며, 이용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 접근 제한이 해제됨. 따라서 불법복제물이 언제든지 다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더불어 접근 제한 조치는 제3자의 접근만

제한할 뿐,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는 이용자는 접근이 가능하므로 해당 페이지의 불법복제물을 다른 페이지로 옮겨 이용할 수 있음.

- 김경숙 위원: 순번 48번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자막파일을 제공 중인 공개 게시물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정경오 위원: 동의함. 앞선 사정들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춘식 위원: 두 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48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9번~6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30개 게시물임.
(순번 49번 및 6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순번 49번~67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PDF 파일을 판매하고 있음. PDF 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자 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김춘식 위원: 순번 49번에서 67번은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판물의 PDF를 판매한다는 거래글을 통해 영리를 취하려고 하는 저작권침해정보이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임. 따라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김경숙, 정경오 위원: 이견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49번~67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

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8번~71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 및 카페에서 방송물을 제공중인 사안이며, 총 4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순번 68번~71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68번~7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72번~216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3,429개 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방송, 영화, 음악, 만화, 출판, 게임, SW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프레디의 피자가게'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17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프레디의 피자가게'의 111분 전체분량을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1. 15.에 개봉 예정인 미국 공포 영화임.

(영화 '금의 나라 물의 나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82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금의 나라 물의 나라'의 117분 전체분량을 48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1. 15.에 개봉 예정인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순번 72번~2,163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72번~2,16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22560호~222578호(순번 1번~1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22579호~222606호(순번 20번~47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22607호(순번 48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22608호~222626호(순번 49번~67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22627호~222630호(순번 68번~7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22631호~224722호(순번 72번~216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7쪽부터 1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2012호~22501호(순번 1번~490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2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1. 15.

분과위원장 대행 김경숙

위원 김춘식

위원 정경오